

정하고, 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토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또는 정비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4월 10일 제출되어 2000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사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사무의 일부가 교육감에게 이양되어 그 권한의 일부를 연금취급기관장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며,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수행하고 있는 무인가 교육시설의 단속권한사무에 대한 위임사무의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제7호)

○“사회교육시설과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제11호)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초·중등 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13호)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99.1.29 개정, '99.7.30 시행)으로 교육감에 이양된 연금사무에 관한 권한 중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99.8.31개정, 2000.3.1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항의 자구수정과, 현재 지역교육청 교육

장이 수행하고 있는 무인가 교육시설의 단속권한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9조 중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7,369명”을 “7,278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7,351명”을 “7,26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의 총수를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5조중 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8호 내지 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제12호 내지 제30호를 제14호 내지 제32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사회교육시설과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7. 소속 공무원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13.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초·중등 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 명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4월 10일 제출되어 2000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사유
  - 2000학년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3교 신설, 고등학교 1교 위치변경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초등학교 3교 신설
    - 서울창립초등학교, 서울신기초등학교, 서울일신초등학교
  - 고등학교 1교 위치변경
    - 수도여자고등학교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 신설
    - 서울신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3개교 및 병설유치원 1개원과 고등학교 1개교의 위치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설, 개원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시설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교사배치, 교구준비 등 개교·개원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초등학교(북부)의 서울오봉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창립초등학교란을, 초등학교(강서)의 서울염동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신기초등학교란을, 초등학교(성북)의 서울오현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일신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등학교(북부)

번호	명칭	위치
56	서울창립초등학교	서울시 도봉구 창2동 412-4

초등학교(강서)

번호	명칭	위치
58	서울신기초등학교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274

초등학교(성북)

번호	명칭	위치
31	서울일신초등학교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1-79

별표3중 고등학교의 수도여자고등학교 위치란 중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68”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70-13”으로 한다.

별표7중 유치원(강서)의 서울양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신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치원(강서)

번호	명칭	위치
9	서울신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27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